

# 예산총칙

제1조 :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804,225,446	24,126,763
1. 일반회계	791,511,970	23,745,359
2. 특별회계	12,713,476	381,404
의료급여기금	1,413,437	42,403
주차장	9,812,157	294,365
주거환경개선사업	409,960	12,299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280,039	8,401
지하수관리	797,883	23,936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4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25,675,235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 :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세, 일반조정교부금, 특별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